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와 대구대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함)는 상호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서비스 및 진학 지원 활성화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협력 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사항)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의 교육 인프라 활용과 학생 교류 및 진학 지원
2.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교육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과 행사 운영을 위한 공동 지원
4. 기타 협력관계 활성화와 공동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 시행)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운영은 양 기관의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 시행한다.

제4조(협약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해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면 통보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5조(협약서 보관)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8월 23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박순진

방순진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곽승호

곽승호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대구대학교와 영진직업전문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함)는 상호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서비스 및 진학 지원 활성화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협력 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사항)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의 교육 인프라 활용과 학생 교류 및 진학 지원
2.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교육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과 행사 운영을 위한 공동 지원
4. 기타 협력관계 활성화와 공동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 시행)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운영은 양 기관의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 시행한다.

제4조(협약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해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면 통보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5조(협약서 보관)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8월 23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박순진

박순진



영진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곽승호

곽승호